

제2842호 2022. 4. 29.(금)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66호 전라북도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1
-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67호 전라북도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
-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68호 전라북도 의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4
-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69호 전라북도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7
-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70호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일부개정훈령 9
-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71호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2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72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15
- 전라북도 고시 제2022-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
- 전라북도 고시 제2022-77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9
- 전라북도 고시 제2022-78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고시(고창군) 34
- 전라북도 고시 제2022-79호 구량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35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28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36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30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37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44호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내용 공고 39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45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4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4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41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42
- 전라북도 공고 제2022-85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43

예 규

- 전라북도의회 예규 제13호 전라북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45

지시사항

- 2022. 4. 25.(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70

시군행정

- 군산시 고시 제2022-57호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72
- 군산시 공고 제2022-91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공사완료 공고 74
- 익산시 고시 제2022-8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76
- 익산시 공고 제2022-1355호 도시계획시설(마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80
- 완주군 공고 제2022-744호 군계획시설(연구시설:KIST전북분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81

전라북도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66호

전라북도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의회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라북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①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표기·사용한다.

② 대외직명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직급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67호

전라북도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라북도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을 “전라북도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여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은 위임”을 “위임”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 의회의장”을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 “의회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을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사목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총무담당관”을 “각 담당관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 사무처리에 있어 전라북도 의회의장·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 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와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전라북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담당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담당관의 전결사항</p> <p>가. ~ 바. (생략)</p> <p>사. 예산 등 전결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p> <p>아. (생략)</p> <p>제8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출무담당관은 이 규정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여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위임 ----- ----- -----.</p> <p>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전라북도의회 의장----- -----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 범위-----</p> <p>아. (현행과 같음)</p> <p>제8조(문서심사관의 임무) 각 담당관과 전문위원----- ----- -----.</p>

전라북도 의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68호

전라북도 의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라북도 의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의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을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의회”를 “전라북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북도 의회 의원”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전라북도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를 “전라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라북도 의회의장(이하”를 “전라북도의회 의장(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회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을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규정된”을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협력위원회”를 “협력위원회의 회의”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때,”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부터 제68조”를 “제72조부터 제8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회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의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전라북도 의회</u>의 남북교류증진과 이를 통하여 남북의 화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u>전라북도 의회 의원</u>(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단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교류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 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에 <u>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u>(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다음 <u>각 호</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남북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의원을 우선으로 하여 <u>전라북도 의회 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의 의원</p> <p>2. <u>의회사무처장</u>(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p> <p>③·④ (생략)</p> <p>⑤위원의 임기는 「<u>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u>」 제31조에 <u>규정된</u>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⑥ (생략)</p> <p>제3조(협력위원회 회의) ①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 <u>전라북도의회</u>-----</p> <p>-----</p> <p>-----</p> <p>-----</p> <p>제2조(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u>전라북도 의회 의원</u>-----</p> <p>-----</p> <p>----- <u>전라북도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에 <u>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u>(이하 “협력위원회”-----</p> <p>-----</p> <p>②-----</p> <p>----- <u>각 호의</u> -----</p> <p>-----</p> <p>1. -----</p> <p>----- <u>전라북도의회 의장</u>(이하 -----</p> <p>-----</p> <p>2. <u>의회사무처장</u>(이하 “사무처장”-----</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u>」 제31조-----</p> <p>-----</p> <p>-----</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조(협력위원회 회의) ①<u>협력위원회의 회의</u>-----</p> <p>----- <u>1 이상</u>-----</p> <p>----- <u>때</u> -----</p> <p>-----</p>

<p>②협력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u>1이상</u>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u>2이상</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u>1 이상</u>----- ----- -- <u>2 이상</u>-----.</p>
<p>③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3조부터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u>제72조부터 제80조</u>----- -----.</p>
<p>제7조(활동결과보고서 제출) ①교류협력활동을 한 의원 또는 의원대표는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의 협조를 거쳐 서면으로 <u>의회의장</u>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수 있다.</p>	<p>제7조(활동결과보고서 제출) ①----- ----- ----- <u>의장</u>-----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u>전라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 ----- 「<u>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
<p>제10조(<u>운영규정</u>) (생 략)</p>	<p>제10조(<u>운영세칙</u>) (현행과 같음)</p>

전라북도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69호

전라북도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라북도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라북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의회기와 전라북도 의회의원”을 “전라북도의회의 의회기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관리등”을 “관리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회기의 규격등)”을 “(의회기의 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라북도의회”로, “규격등”을 “규격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의회”자””를 “이하 ““의회”자””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 의회의원 배지(이하”를 “전라북도의회 의원 배지(이하”로, “규격등”을 “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체부 훈민정음체”의 “의회”자”를 ““의회”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의회를 상징하는 <u>전라북도 의회기</u>와 <u>전라북도 의회의원</u> 배지의 도형, 제작, <u>관리</u>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u>전라북도 의회기</u>(이하“의회기”라 한다.)의 도형, 색상, <u>규격</u>등은 다음과 같다.</p> <p>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문체부 훈민정음체의 “”의회“”자(이하“의회”자”라 한다.)”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전라북도의회”자를 예서체로 한다.</p> <p>2. 3. (생 략)</p> <p>② 3. (생 략)</p> <p>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생 략)</p> <p><u>②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u></p> <p>제6조(의회 배지의 제식) ①<u>전라북도 의회의원</u> 배지(이하“의원 배지”라 한다.)의 모형, 색상, <u>규격</u>등은 다음과 같다.</p> <p>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 원에 ‘문체부 훈민정음체’의 “의회”자를 표시한다.</p> <p>2. (생 략)</p> <p>3. 규격은 <u>별표2</u>와 같다.</p> <p>② (생 략)</p> <p>제7조(의회 배지의 교부 등) ① (생 략)</p> <p>②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p>	<p><u>전라북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 <u>전라북도의회의 의회기</u>와 <u>전라북도의회 의원</u> ----- -- <u>관리</u> 등----- -.</p> <p>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u>전라북도의회</u> ----- ----- <u>규격</u> 등----- -.</p> <p>1. ----- ----- --이하 “의회”자”-----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현행과 같음)</p> <p><u>②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u></p> <p>제6조(의회 배지의 제식) ①<u>전라북도의회 의원</u> 배지(이하 ----- <u>규격</u> 등----- -----. 1. ----- ----- “의회”자----- -----.</p> <p>2. (현행과 같음)</p> <p>3. ---- <u>별표 2</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회 배지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른 사람</u>----- ----- -----.</p>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70호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의하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5인”을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씩”을 “1명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구성후 10일”을 “구성 후 30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총괄하여”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31조”를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팀장”을 “정책홍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내에서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조(목적) ----- -----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하여 5명 -----.</p>
<p>②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p>	<p>②----- 1명씩 -----.</p>
<p>③·④ (생 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위원회는 의회 전반기 및 후반기 원 구성후 10일 이내에 구성한다.</p>	<p>⑤----- 구성 후 30일 -----.</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제4조(기능) ----- 각 호-----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타 편집과 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4. 그 밖의 -----</p>
<p>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p>	<p>제5조(직무) 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p>
<p>②위원장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부득이한 사유----- -----.</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규정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적용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p>
<p>②·③ (생 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u>1인</u>을 둔다.</p> <p>②간사는 의회사무처의 <u>공보팀장</u>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업무담당자가 된다.</p> <p>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u>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의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u>업무</u>----- ----- <u>1명</u>-----.</p> <p>②----- <u>정책홍보팀장</u>----- -----.</p> <p>제9조(수당과 여비) ----- ----- ----- <u>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
---	--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71호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필요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③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u></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인터넷민원”이라 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의회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6. (생 략)</p> <p>7.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p> <p>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사무처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책임자와 부서별 자료관리 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지정·운영한다.</p> <p>1. ~ 3. (생 략)</p> <p>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사무처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밝혀야 한다.</p> <p>1. ~ 8. (생 략)</p> <p>9.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p> <p>제7조(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민원은 민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u>전라북도의회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u></p> <p>제3조(정의) ----- 뜻은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p> <p>5.·6. (현행과 같음)</p> <p>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p> <p>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 각 호와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 어느 하나에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그 밖의 -----</p> <p>제7조(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따라 -----.</p>

<p>제9조(개인정보보호) 사무처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u>타인</u>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0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사무처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u>강구</u>해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 ----- <u>다른 사람</u>----- ---.</p> <p>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필요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p> <p>③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p> <p>제10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 <u>마련</u>-----.</p> <p>② (현행과 같음)</p>
---	---

전라북도 고시 제2022-72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 정책과 및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지사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6,604,590	-	456,604,590	100.00	
도 시 지 역	207,398,894	-	207,398,894	45.42	
비 도시 지역	249,205,696	-	249,205,696	54.58	
관 리 지 역	128,555,350	증) 9,879	128,565,229	28.16	
보전관리지역	80,314,591	-	80,314,591	17.59	
생산관리지역	19,325,473	-	19,325,473	4.23	
계획관리지역	28,915,286	증) 9,879	28,925,165	6.33	
농 립 지 역	118,773,346	감) 9,879	118,763,467	26.01	
자연환경보전지역	1,877,000	-	1,877,000	0.41	

※ 기정은 전라북도고시 제2020-192호(2020.6.26.)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기준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관리 지역	9,879	100% 이하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및 기 조성된 육종연구시설의 로컬푸드 인증을 위해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현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 : “실읍생략”

전라북도 고시 제2022-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m)
기정	지방도	749	산외~소양	완주군 상관면 일원	7,239	상관면 의암리 163-9	상관면 의암리 196-2	-	400
변경	지방도	749	산외~소양	완주군 상관면 일원	5,938	상관면 의암리 163-9	상관면 의암리 196-2	-	401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계획하폭 확장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2. 6. ~ '23. 12.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063-280-4403)
완주군 재난안전과(063-290-2924)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49	노선명	산외~소양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163-2 ~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196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서측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①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8,620	소양면 화심리 379-1	상관면 신리 287-11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22호 (2013.1.25)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8,621	소양면 화심리 379-1	상관면 신리 287-11	일반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1-5	소로1-5	• L=8,620m → 8,621m (증1m)	• 소로 1-5 일부구간 선형 변경에 따른 연장 조정 (확장)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서 열람 가능

【 불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						19,950	7,239	5,938	감)1,301		
1	완주	상관	의암	163-17	도	41	41	41	-	-	완주군
2	완주	상관	의암	162-4	도	50	4	-	감)4	-	완주군
3	완주	상관	의암	810-1	도	51	51	41	감)10	-	건설부
4	완주	상관	의암	163-9	도	31	29	29	-	-	완주군
5	완주	상관	의암	162-5	도	31	29	11	감)18	-	완주군
6	완주	상관	의암	162-3	도	10	10	1	감)9	-	완주군
7	완주	상관	의암	163-16	도	79	79	79	-	-	완주군
8	완주	상관	의암	163-7	도	130	130	130	-	-	완주군
9	완주	상관	의암	800-27	구	7,138	170	134	감)36	-	건설부
10	완주	상관	의암	809-2	도	769	366	196	감)170	-	건설부
11	완주	상관	의암	185-3	도	51	51	12	감)39	-	완주군
12	완주	상관	의암	185-2	도	69	69	52	감)17	-	완주군
13	완주	상관	의암	165-1	도	46	46	46	-	-	완주군
14	완주	상관	의암	166-4	도	441	441	441	-	-	완주군
15	완주	상관	의암	166-3	도	102	102	78	감)24	-	완주군
16	완주	상관	의암	167-2	도	248	248	109	감)139	-	완주군
17	완주	상관	의암	167-4	도	413	413	413	-	-	완주군
18	완주	상관	의암	182-5	도	7	7	7	-	-	완주군
19	완주	상관	의암	182-6	도	3	3	3	-	-	완주군
20	완주	상관	의암	184-2	도	26	26	-	감)26	-	완주군
21	완주	상관	의암	182-4	도	188	188	140	감)48	-	완주군
22	완주	상관	의암	182-7	도	306	36	306	증)270	-	완주군
23	완주	상관	의암	182-3	도	192	192	-	감)192	-	완주군
24	완주	상관	의암	181-2	도	89	89	31	감)58	-	완주군
25	완주	상관	의암	181-6	도	842	842	803	감)39	-	완주군
26	완주	상관	의암	181-4	도	192	192	-	감)192	-	완주군
27	완주	상관	의암	181-8	답	82	-	82	증)82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	정**
28	완주	상관	의암	181-3	도	23	23	2	감)21	-	완주군
29	완주	상관	의암	179-2	도	251	251	10	감)241	-	완주군
30	완주	상관	의암	179-3	도	709	709	597	감)112	-	완주군
31	완주	상관	의암	179-4	답	202	-	202	증)202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 ***	정** 외2명
32	완주	상관	의암	178-1	도	47	47	47	-	-	완주군
33	완주	상관	의암	178-2	전	85	-	85	증)85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	박**
34	완주	상관	의암	195-4	답	53	-	53	증)53	완주군 상관면 계월길 ***	이**
35	완주	상관	의암	195-2	도	145	145	51	감)94	-	완주군
36	완주	상관	의암	195-3	도	1,156	1,156	1,115	감)41	-	완주군
37	완주	상관	의암	808-2	도	436	436	142	감)294	-	건설부
38	완주	상관	의암	800-24	구	5,148	550	381	감)169	-	건설부
39	완주	상관	의암	196-2	도	68	68	68	-	-	완주군

전라북도 고시 제2022-77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4월 29일

I. 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장구리, 용암리 일원
- 면적 : 3,073,700.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완주군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육성, 지역산업 고도화 촉진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완주군수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1995.5.8~2019.12.31
(변경)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일로부터 ~ 2024.12.31
-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변경사유

- 미세먼지 등 환경여건 악화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높은 실내 어린이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기존 수소충전소부지 남측에 연접하여 수소 저장 및 출하시설 설치 및 대형 차량(수소운송 및 공급용 트레일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진출입로 확폭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E), 메카트로닉스(MT), 신소재, 생물산업, 기존산업의
첨단분야(자동차), 기타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면적	비율(%)			
합 계	3,073,700.9	3,073,700.9	-	-	100.0		
산업 시설	소 계	1,812,027.7	1,798,063.9	△13,963.8	△0.77	58.5	
	연구시설	330,672.3	316,708.5	△13,963.8	△4.22	10.3	연구시설→공공시설
	산업시설	1,481,355.4	1,481,355.4	-	-	48.2	
주거 시설	소 계	230,441.9	230,441.9	-	-	7.5	
	주 거 시 설	224,166.3	224,166.3	-	-	7.3	
	근 린 생 활 시 설	6,275.6	6,275.6	-	-	0.2	
상업 시설	소 계	42,288.3	42,288.3	-	-	1.4	
	중 심 상 업	42,288.3	42,288.3	-	-	1.4	
공공 시설	소 계	908,662.9	922,626.7	+13,963.8	+1.54	30.0	
	학 교	49,577.7	49,577.7	-	-	1.6	
	공 공 청 사	52,901.7	52,901.7	-	-	1.7	
	체 육 시 설	-	13,963.8	+13,963.8	+100.0	0.5	어린이체육관 신설
	도 로	384,879.2	385,002.2	+123.0	+0.03	12.5	충전소 진출입로 확장
	주 차 장	6,758.3	6,758.3	-	-	0.2	
	공 원	162,349.7	162,349.7	-	-	5.3	
	녹 지	194,881.5	194,758.5	△123.0	△0.06	6.4	녹지→도로
	폐 기 물 처 리 장	28,580.5	28,580.5	-	-	0.9	
	저 류 지	3,459.1	3,459.1	-	-	0.1	
	오 수 중 계 펌 프 장	2,517.2	2,517.2	-	-	0.1	
지원 시설	소 계	80,280.1	80,280.1	-	-	2.6	
	지 원 시 설	75,770.5	75,770.5	-	-	2.5	
	중 교 용 지	4,509.6	4,509.6	-	-	0.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

○ 도로(변경)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타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면적(m ²)
기정	합계	54	20,396.2	384,879.2	19	8,381.6	171,260.1	26	6,615.7	85,031.3	9	5,398.9	114,600.1	13,987.7
변경	합계	54	20,396.2	385,002.2	21	8,425.6	171,712.1	26	6,615.7	85,031.3	7	5,354.9	114,271.1	13,987.7
기정	대로	3	5,582.9	152,049.5	1	1,439.2	50,486.0	-	-	-	2	4,143.7	101,563.5	
기정	중로	24	11,314.8	189,554.9	10	5,855.7	109,907.1	11	4,451.0	67,550.6	3	1,008.1	12,097.2	
기정	소로	27	3,498.5	29,287.1	8	1,086.7	10,867.0	15	2,164.7	17,480.7	4	247.1	939.4	
변경	소로	27	3,498.5	29,410.1	10	1,130.7	11,319.0	15	2,164.7	17,480.7	2	203.1	610.4	

○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면 적 (m ²)	개소	비고
기정	주 차 장	6,758.3	5	

2) 공간시설계획(변경)

○ 공원(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공 원	합 계	162,349.7	5	
		근린공원	159,322.8	3	
		어린이공원	3,026.9	2	

○ 녹지(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합 계		217,639.5	13	
	녹 지	경관녹지	99,938.5	3	
	녹 지	완충녹지	117,701	10	
변경	합 계		217,516.5	13	
	녹 지	경관녹지	99,938.5	3	
	녹 지	완충녹지	117,578	10	

3)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 학교(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합 계		49,577.7	3	
	학 교	중학교	11,999.7	1	
	학 교	초등학교	37,578.0	2	

○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공공청사	우편집중국 전파관리소	51,910.7	1	

○ 체육시설(신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신설	체육시설	어린이체육관	13,963.8	1	

4)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용수량(m ³ /일)	공 급 계 획	비고
기정	합 계	22,204		
	공업용수	11,066	완주산업단지내 정수장	
	생활용수	11,138	전주권 광역상수도	
변경	합 계	22,184		
	공업용수	11,026	완주산업단지내 정수장	
	생활용수	11,158	전주권 광역상수도	

○ 폐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면 적(m ²)	처리량(m ³ /일)	비고
기정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	46,726	31,576	
변경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	46,726	31,556	

○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수요량(KVA)	공 급 계 획	비고
기정	합 계	143,134	○ 산단내 북전주변전소(154kV)에서 전력공급	
	산 업 용	112,096		
	주 거 용	2,426		
	지 원 용	11,497		
	기 타	17,115		교육·연구용

○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통신수요량(회선)	공 급 계 획	비고
기정	합 계	52,276	○ 단지내 ONU(초고속망공급장치기계설)를 설치하여 공급	
	산 업 용	30,543		
	주 거 용	5,783		
	지 원 용	14,736		
	기 타	1,214		

5) 보건위생시설계획(변경없음)

○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지 포함)	봉동읍 둔산리 945-1, 2 일원	5,976.3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봉동읍 둔산리 945-3	28,580.5	

6)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하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연장(m)	폭원(m)	면적(m ²)	비고
기정	장구천	소하천	1.7	3.6~23.5	22,758	

다. 산업단지 외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1	35 ~40	주간선	7,553.0	대로1-2	봉동읍 제내리 구역계	일반 도로	과학산업 연구단지	전고제135호 (78.5.22)	구역외
기정	중로	3	31	12	집산 도로	362.0	대로1-1	중로1-8	일반 도로	-	전고제04-287호 (04.11.5)	구역외
기정	소로	1	33	10	국지 도로	226.0	대로1-1	소로1-32	일반 도로	-	완고제2012-66호 (12.7.20)	구역외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266.0	산업단지 구역계	중로3-31	일반 도로	-	전고제17-101호 (17.06.02)	구역외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 공원(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용암소공원	소공원	봉동읍 용암리 산36 일원	4,162.0	전고제17-101호 (17.06.02)	구역외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어린이체육관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2필지		13,963.8	13,963.8						
1	봉동읍 둔산리	855-6	대	8,664.4	8,664.4	완주군					
2	봉동읍 둔산리	855-10	대	5,299.4	5,299.4	완주군					

나. 수소충전소 및 진출입로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2필지		288,576.7	5,464						
1	봉동읍 둔산리	951-1	장	278,727.8	4,89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				수소저장 및 출하시설 (무상임대)
2	봉동읍 둔산리	951-5	장	9,848.9	566.0 (443.0)	완주군	-				진출입로 확폭 (() 기정)

9. 관련도서 열람 방법

- 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완주군청(일자리경제과 ☎ 063-290-249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II. 실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시행자 : 완주군수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국가의 장기적 발전구상에 부응하는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 과학기술의 강화로 고급인력의 지방정착유도
 -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간 연계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버스 개발 양산 및 전라북도 수소 승용차 보급 등 수소산업 확산에 따른 전라북도 제1호 수소충전소 설치
- 사업의 개요(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면적	비율(%)			
합 계	3,073,700.9	3,073,700.9	-	-	100.0		
산업 시설	소 계	1,812,027.7	1,798,063.9	△13,963.8	△0.77	58.5	
	연구시설	330,672.3	316,708.5	△13,963.8	△4.22	10.3	연구시설→공공시설
	산업시설	1,481,355.4	1,481,355.4	-	-	48.2	
주거 시설	소 계	230,441.9	230,441.9	-	-	7.5	
	주 거 시 설	224,166.3	224,166.3	-	-	7.3	
	근 린 생 활 시 설	6,275.6	6,275.6	-	-	0.2	
상업 시설	소 계	42,288.3	42,288.3	-	-	1.4	
	중 심 상 업	42,288.3	42,288.3	-	-	1.4	
공공 시설	소 계	908,662.9	922,626.7	+13,963.8	+1.54	30.0	
	학 교	49,577.7	49,577.7	-	-	1.6	
	공 공 청 사	52,901.7	52,901.7	-	-	1.7	
	체 육 시 설	-	13,963.8	+13,963.8	+100.0	0.5	어린이체육관 신설
	도 로	384,879.2	385,002.2	+123.0	+0.03	12.5	충전소 진출입로 확장
	주 차 장	6,758.3	6,758.3	-	-	0.2	
	공 원	162,349.7	162,349.7	-	-	5.3	
	녹 지	194,881.5	194,758.5	△123.0	△0.06	6.4	녹지→도로
	폐 기 물 처 리 장	28,580.5	28,580.5	-	-	0.9	
	저 류 지	3,459.1	3,459.1	-	-	0.1	
지원 시설	소 계	80,280.1	80,280.1	-	-	2.6	
	지 원 시 설	75,770.5	75,770.5	-	-	2.5	
	중 교 용 지	4,509.6	4,509.6	-	-	0.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장구리, 용암리 일원

나. 면 적

- 산단면적 : 3,073,700.9m²(변경없음)
- 금회 사업면적 : 18,984.8m²
 - 1) 어린이체육관 신설 : 13,963.8m²
 - 2) 수소저장·출하시설 설치 및 진출입로 확장 : 5,021m²
 - 수소저장·출하시설 설치 : 4,898m²
 - 진출입로 확장 : 123m²
 - 완충녹지 축소 : 123m²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1995.5.8~2019.12.31
(변경)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일로부터 ~ 2024.12.31
- 시행방법 : 공영개발

6.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면적(m ²)			비율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3,073,700.9	3,073,700.9	-	100	
주거지역	385,613.4	387,403.5	+1,790.1	12.6	
일반주거지역	385,613.4	387,403.5	+1,790.1	12.6	도로중심선으로 경계조정
상업지역	73,975.2	73,975.2	-	2.4	
일반상업지역	73,975.2	73,975.2	-	2.4	
공업지역	2,272,822.1	2,271,032	△1,790.1	73.9	
일반공업지역	2,174,534.3	2,156,186.8	△18,347.5	70.1	체육시설부지용도변경
준공업지역	98,287.8	114,845.2	+16,557.4	3.8	체육시설부지 용도변경
녹지지역	341,290.2	341,290.2	-	11.1	
자연녹지지역	341,290.2	341,290.2	-	11.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장구리, 용암리 일원	합 계	3,073,700.9	3,073,700.9		·체육시설부지 용도 변경 및 도로중심선으로 경계조정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주거지역	385,613.4	387,403.5	200~250%	
	일반상업지역	73,975.2	73,975.2	1,300%	
	일반공업지역	2,174,534.3	2,156,186.8	350%	
	준공업지역	98,287.8	114,845.2	400%	
	자연녹지지역	341,290.2	341,290.2	100%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교통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 장 (m)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0,396.2	-	20,396.2	384,879.2	+123.0	385,002.2	
기정	대로	1	35	1,439.2	-	1,439.2	50,486.0	-	50,486.0	
기정	대로	3	25	4,143.7	-	4,143.7	101,563.5	-	101,563.5	
기정	중로	1	20~22	5,855.7	-	5,855.7	109,907.1	-	109,907.1	
기정	중로	2	15~19	4,451.0	-	4,451.0	67,550.6	-	67,550.6	
기정	중로	3	12	1,008.1	-	1,008.1	12,097.2	-	12,097.2	
변경	소로	1	10	1,086.7	증) 44.0	1,130.7	10,867.0	+452.0	11,319.0	
기정	소로	2	8	2,164.7	-	2,164.7	17,480.7	-	17,480.7	
변경	소로	3	3	247.1	감) 44.0	203.1	939.4	△329.0	610.4	
기정	기타	-	-	-	-	-	13,987.7	-	13,987.7	각각부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계						22,665.9 (20,396.2)						
기정	대로	1	5	35	주간선	3,708.9 (1,439.2)	대로1-1	50호 광장	일반	과학산업 연구단지	전고제211호 (91.10.28)	
기정	대로	3	3	25	보조간선	3,068.7	대로1-1	대로1-5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	1,075.0	대로3-3	대로1-5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	545.0	대로3-3	대로3-4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	505.0	대로1-5	중로1-11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6	20	보조간선	663.0	대로1-5	대로3-3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	20	보조간선	480.0	대로1-5	중로1-11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8	20	보조간선	347.0	중로1-11	중로1-12 (동측지구계)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9	20	보조간선	254.5	대로3-3	서측지구계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10	20	보조간선	1,167.0	대로3-4	대로3-3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11	20	보조간선	1,237.0	대로1-5	중로1-5 (남측지구계)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12	17	보조간선	525.2	중로1-11	중로1-11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1	19	22	보조간선	132.0	대로3-3	북측지구계	일반		-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817.0	대로3-3	대로3-4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371.5	대로3-3	중로1-10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250.0	대로1-5	중로1-10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309.2	대로1-5	대로1-10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354.8	중로1-4	중로2-6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735.0	대로3-4	중로1-6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70.0	중로1-11	동측지구계	일반		전고제03-362호 (03.12.19)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460.5	중로1-6	중로1-10	일반		전고제03-362호 (03.12.19)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219.2	중로1-11	둔산리 924	일반		전고제05-31호 (05.3.18)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447.8	중로1-9	대로3-3	일반		전고제06-134호 (06.6.16)	
기정	중로	2	27	16~19	집산도로	216.0	광장1	중로2-6	일반		전고제17-101호 (17.06.02)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298.3	중로1-6	중로3-8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419.8	중로2-11	중로2-9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290.0	대로1-5	중로1-10	일반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02.5	대로3-3	폐기물처리장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112.0	대로3-4	소로1-23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248.2	중로1-10	중로2-11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358.9	중로2-11	소로1-18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70.0	대로1-5	중로2-11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7.0	중로1-10	소로1-18	보행자 전용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33.1	대로1-5	중로3-7	보행자 전용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45.0	대로3-4	중로2-6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38	8	국지도로	201.5	소로1-25	중로2-6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131.5	소로2-38	소로1-25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40	8	국지도로	148.5	소로2-38	소로1-25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80.0	중로1-10	소로1-20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80.0	소로1-10	소로2-46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275.0	소로1-18	소로1-19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275.0	소로1-18	소로1-19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46	8	국지도로	153.5	중로2-9	소로1-20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130.0	소로1-20	소로1-19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48	8	국지도로	127.0	소로1-20	소로1-19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49	8	국지도로	95.5	소로1-20	소로2-48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50	8	국지도로	114.0	소로1-20	소로1-19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51	8	국지도로	29.0	중로2-9	중로3-8	일반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소로	2	53	8	특수도로	247.2	대로1-1	중로2-6	보행자 전용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소로	2	75	8	국지도로	77.0	광장1	산업단지 구역계	일반		전고제17-101호 (17.06.02)	
기정	소로	3	1	3	특수도로	77.0	대로1-5	중로2-13	보행자 전용		전고제03-362호 (03.12.19)	
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126.1	중로1-12	대로1-5	보행자 전용		전고제03-362호 (03.12.19)	
기정	소로	3	74	7	국지도로	21.0	대로1-5	수소충전소	일반		전고제19-137호 (19.06.21)	
변경	소로	1	26	10	국지도로	21.0	대로1-5	수소충전소	일반		전고제19-137호 (19.06.21)	확폭
기정	소로	3	75	7	국지도로	23.0	대로1-5	수소충전소	일반		전고제19-137호 (19.06.21)	
변경	소로	1	27	10	국지도로	23.0	대로1-5	수소충전소	일반		전고제19-137호 (19.06.21)	확폭

* ()는 산업단지 내 도로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74	소로1-26	도로폭 확장(7→10m)	수소 저장 및 출하시설 대형차량(수소운송 및 공급용 트레일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진출입로 확폭
소로3-75	소로1-27	도로폭 확장(7→10m)	수소 저장 및 출하시설 대형차량(수소운송 및 공급용 트레일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진출입로 확폭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6,758.3		
기정	1	주 차 장	봉동읍 둔산리 900-3 일원	1,529.3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2	주 차 장	봉동읍 둔산리 907-3 일원	1,041.6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3	주 차 장	봉동읍 둔산리 870-3 일원	1,595.4	완고제98-12호 (98.2.2)	
기정	4	주 차 장	봉동읍 둔산리 947 일원	2,592.0	완고제98-12호 (98.2.2)	

○ 공간시설계획(변경)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총괄표

구분	구분	행정구역(m ²)						시가화구역(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면적	개소	면적			
합계		5	162,349.7		5	162,349.7	3	18,874.0		3	18,874.0			
기정	근린공원	3	159,322.8		3	159,322.8	1	15,847.1		1	15,847.1			
기정	어린이공원	2	3,026.9		2	3,026.9	2	3,026.9		2	3,026.9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2,349.7		162,349.7		
기정	9	제1근린공원(중앙공원)	근린공원	봉동읍 둔산리 881 일원	76,061.0	-	76,061.0	전고제95-75호(95.5.8)	
기정	10	제2근린공원	근린공원	봉동읍 둔산리 898-1 일원	15,847.1	-	15,847.1	전고제95-75호(95.5.8)	
기정	14	제1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봉동읍 둔산리 875-1 일원	1,490.1	-	1,490.1	전고제95-75호(95.5.8)	
기정	15	제2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봉동읍 둔산리 895-4 일원	1,536.8	-	1,536.8	전고제95-75호(95.5.8)	
기정	19	배매산근린공원	근린공원	봉동읍 둔산리 946 일원	67,414.7	-	67,414.7	전고제95-75호(95.5.8)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봉동읍 둔산리 864-3 일원	53,538.7	-	53,538.7	전고제95-75호(95.5.8)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봉동읍 둔산리 870-2 일원	24,814.6	-	24,814.6	전고제95-75호(95.5.8)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봉동읍 둔산리 955 일원	21,585.2	-	21,585.2	전고제95-75호(95.5.8)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867 일원	27,775.5	-	27,775.5	완고제98-12호(98.2.2)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862 일원	25,176.0	-	25,176.0	완고제98-12호(98.2.2)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850 일원	12,656.0	-	12,656.0	완고제98-12호(98.2.2)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854 일원	7,216.3	-	7,216.3	전고제95-75호(95.5.8)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931-2 일원	3,403.8	-	3,403.8	완고제98-12호(98.2.2)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926-2 일원	8,991.0	-	8,991.0	전고제95-75호(95.5.8)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923 일원	16,814.9	-	16,814.9	전고제95-75호(95.5.8)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944 일원	3,306.5	-	3,306.5	전고제95-75호(95.5.8)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864-4 일원	2,955.1	-	2,955.1	완고제98-12호(98.2.2)	
변경	16	녹지	완충녹지	봉동읍 둔산리 951-1 일원	9,405.9	△123.0	9,282.9	전고제15호(05.2.11)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녹지	완충녹지	면적감소(△123㎡) (9,405.9㎡→9,282.9㎡)	소로1-26, 1-27 확장에 따른 면적감소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 교	봉서 중학교	봉동읍 둔산리 857-2	11,999.7	-	11,999.7	전고제386호 (01.12.14)	
기정	2	학 교	봉서 초등학교	봉동읍 둔산리 954	17,863.0	-	17,863.0	전고제95-75호 (95.5.8)	
기정	3	학 교	초등학교	봉동읍 둔산리 864-3외 3필지	19,715.0	-	19,715.0	전고제16-123호 (16.7.1)	

2)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청사	우편집중국 전파관리소	봉동읍 둔산리 855-34	51,910.7	-	51,910.7	전고제95-75호 (95.5.8)	

3) 체육시설(신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어린이체육관	봉동읍 둔산리 855-6 일원	-	+13,963.8	13,963.8	금회	

▪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	어린이체육관	신설 13,963.8㎡	어린이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1)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수도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지 포함)	봉동읍 둔산리 945-1.2 일원	5,976.3	-	5,976.3	전고제95-75호 (95.5.8)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봉동읍 둔산리 945-3	28,580.5	-	28,580.5	전고제75호 (95.5.8)	

3) 방재시설(변경없음)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km)	폭 원 (m)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중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장구천	소하천	장구리 546-8	장구리 546-13 (석탑천)	테크노 벨리	1.7	3.6~23.5	22,758.0	전고제10 -352호 (10.12.31)	

다. 산업단지 외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1	35 ~40	주간선	7,553.0	대로1-2	봉동읍 제내리 구역계	일반 도로	과학산업 연구단지	전고제135호 (78.5.22)	구역외
기정	중로	3	31	12	집산 도로	362.0	대로1-1	중로1-8	일반 도로	-	전고제04-287호 (04.11.5)	구역외
기정	소로	1	33	10	국지 도로	226.0	대로1-1	소로1-32	일반 도로	-	완고제2012-66호 (12.7.20)	구역외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266.0	산업단지 구역계	중로3-31	일반 도로	-	전고제17-101호 (17.06.02)	구역외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 공원(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정	용암소공원	소공원	봉동읍 용암리 산36 일원	4,162.0	전고제17-101호 (17.06.02)	구역외

7.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전라북도 고시 제2022-78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고창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4월 29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고창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1	고창군	매산지구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54-1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고창군	매산지구	955	689,327	987	599,480	32 (3.4%)	△89,847 (13%)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변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고창군청 설다훤(063-560-2414)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79호

구량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청(공항하천과), 무주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4월 29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구량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22. 4. 29
3. 지정 사유 : 하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m ²)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구량천	7개지구 (좌안 - 4개 지구, 우안 - 3개 지구)		26.000	725,428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320-1번지선 (No.4+985)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1433-2번지선 (No.0+000)	4.985	297,997	하천정비 사업시행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42번지선 (No.9+155)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320-1번지선 (No.4+985)	4.170	137,761	하천정비 사업시행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741-7번지선 (No.10+585)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42번지선 (No.9+155)	1.430	37,584	하천정비 사업시행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산21-3번지선 (No.13+000)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741-7번지선 (No.10+585)	2.415	31,826	하천정비 사업시행
	좌안부 소계		13.000	505,168	4지구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1745번지선 (No.4+985)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1433-2번지선 (No.0+000)	4.985	38,602	하천정비 사업시행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424번지선 (No.8+600)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1745번지선 (No.4+985)	3.615	54,737	하천정비 사업시행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180번지선 (No.13+000)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424번지선 (No.8+600)	4.400	126,921	하천정비 사업시행
	우안부 소계		13.000	220,260	3지구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공고 제2022-828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4월 29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2.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서암5길 5
3. 대표자성명 : 이재희
4. 주된 사업
 - 전통적 농경문화의 선양과 계승 발전 및 민속문화의 발굴 육성
 - 지평선축제 등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 지평선축제 발전을 위한 출판, 공연, 교육사업
 - 기타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16조, 제46조)
6. 변경허가연월일 : 2022. 4. 20..

전라북도 공고 제2022-830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4월 29일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 전북-2003-제000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3.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77 YMCA 5층
4. 대 표 자 : 이 순 태(1957. 06. 12)
5. 주요사업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 노인 일거리 마련센터를 설치 운영
 - 노인 문화활동의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활동
6. 변경 허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7. 변경 허가일자 : 2022. 04. 21

□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정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나누는 사람들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주민의 문화주권을 회복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무소) ①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5길 32-5(금암동 620-17번지)에 두고 전라북도 내 시·군에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시·군 지부를 둘수 있다</p> <p>②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1조(목적)나누는 사람들은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주민의 문화주권을 회복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무소) ①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고 전라북도 내 시·군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시·군 지부를 둘수 있다.</p> <p>②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전라북도 공고 제2022-844호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799호선	노 선 명	삼례~탄천
도로공사의 종류	(당초) 지방도 확포장 L=1.6km B=30.5~47.2m (보도, 자전거도로) (변경) 지방도 확포장 L=1.86km B=29.25~47.35m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도로공사 구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도로공사 시행장소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89-31 ~ 봉동읍 용암리 81-9		
도로공사 착공일	2018. 10. 1.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2. 12. 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도799호선의 가감속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고시 제2021-204호)에 따른 변경		

전라북도 공고 제2022-845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4월 29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53호	동원티앤씨 주식회사 대표 장영아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92, 1층 3호(경장동)	2022.4.20.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84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4월 29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54호	주식회사 라곤이엔씨 대표 김보라	전라북도 남원시 금하정1길 7-5, 1층(금동)	2022.4.22.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8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2. 6. 1. ~ 2023. 5.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로사업 (김제 석동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지방도 711호선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산85-1번지 ~ 성덕면 석동리 760-4번지 일원	○ 연장 : 330m ○ 폭원 : 9.5m	전라북도지사(도로관리사업소)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도로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선형 개량 / (당초) 8,073㎡ (변경) 8,799㎡

3.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전라북도(도로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2022. 4. 29. ~ 2022. 5. 13.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4. 29. ~ 2022. 5. 13.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전화번호 : 063-280-4403),
도로관리사업소(전화번호 : 063-290-6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2-85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4월 29일

공인의 등록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부서명 변경(남중119안전센터 → 신동119안전센터)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2년 4월 29일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익산소방서 신동119안전센터	익산소방서신동119안전센터장인	
익산소방서 신동119안전센터	익산소방서신동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공인		
공인명	인영	
익산소방서 남중119안전센터	익산소방서남중119안전센터장인	

등록공인		
익산소방서 남중119안전센터	익산소방서남중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2022년 4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예규 제13호

전라북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전라북도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전라북도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총무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의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의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의회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신청인	① 담당 업무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찰·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종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	--------

조치대상	<input type="checkbox"/>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input type="checkbox"/>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직무 재배정 <input type="checkbox"/> 전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input type="checkbox"/>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종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input type="checkbox"/> 직무 대리자 지정 <input type="checkbox"/>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직무 재배정 <input type="checkbox"/> 전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신청 사유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종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안·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비용부담자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종결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 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라북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자우편 [] 전화 [] 방문 [] 기타()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족 채용 제한 <input type="checkbox"/>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체결 제한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input type="checkbo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4. 25.(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2 -34	프레젠퍼리 및 새만금세계잼버리 준비 철저	<p>○ 지난 4월 12일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예정대로 '23. 8월 개최하기로 공식 결정*되었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잼버리에 앞서 1년 전 사전 점검하는 프레젠퍼리**가 4개월정도 남은 점을 감안하여 야영장 환경·시설 점검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람. - 특히, 지역경제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운영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 및 야영장 조성공사, 체험·공연 프로그램 개발, 안전대책 마련 등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글로벌청소년 리더센터도 적기에 건립하여 청소년 상시 야영장으로 활용 및 리더교육, 체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p>*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회 결정 : 세계잼버리 일정 확정 '23.8.1.~8.12. ** 세계잼버리에 1년 앞서 사전 점검하는 예비행사 : '22.8.2.~8.17.</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잼버리지원단 / 협조 :)</p>
2022 -35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철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안전 보장 못하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민방위 대피소’(4.14. 국민일보) </div> <p>○ 도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 표지판, 물품 비치 등 대피시설 안전 점검 추진 및 비상시 대피·행동요령 등 도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산출된 대피 인원이 실제 수용 가능한지 여부와 상시활용 가능하도록 보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안전정책관 / 협조 :)</p>
	당면·현안업무	<p>○ 새 정부 출범 대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정부 국정과제 최종안을 당선인에 보고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안 보고) 4.25. → (확정안 보고) 5.3. → (대국민 발표) 5.3. - 우리 도 공약·현안사업과 관련, 지난 20일 당선인 전북 방문 시 발언내용*을 잘 정리하여 새 정부 공약 및 현안 건의 활동 시 활용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확정)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여 국가예산 확보 연계 등 대응을 강화하기 바람. - 새 정부의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 재검토 및 메가시티 방향 정립 등 주요정책의 변경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바람. <p>* -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조성” - “금융산업도 규제 풀어 고소득 일자리 창출” - “새만금 개발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 전 실·국)</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철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4.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 감염병 등급 하향(1급 → 2급) 조정(4.25.~) - 60세 이상 4차 예방접종(4.25.~) </div> <p>- '20. 3월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해제되었으므로 도민에게 변경된 방역 및 의료체계의 내용과 시점에 대해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여 홍보하고, 현 상황에 맞게 기 구입한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 관리와 인력배분(인력구조) 문제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p>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 : 사회재난과, 감염병관리과 / 협조 : 안전정책관, 전 실·국)</p>

군산시 고시 제2022-5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29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방재시설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유수지	유수시설	군산시 산북동 1024-5번지 일원	-	증) 7,633	7,633	

2)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4	유수지	· 유수지 신설 - 위치 : 전북 군산시 산북동 1024-5번지 일원 - 면적 : 7,633m ²	· 기 선정된 산북 배수분구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함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http://www.eum.go.kr/web/am/amMain.jsp>)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

제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편입토지 세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수분	소유자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1	군산시 산북동	1010-2	구거	사유지	한국농어촌공사	7,150	332
2	군산시 산북동	1024-5	답	사유지	최*례	2,456	2,456
3	군산시 산북동	1024-14	답	사유지	유한회사 대양이엔티	1,752	1,752
4	군산시 산북동	1025-5	답	사유지	최*례	1,960	1,960
5	군산시 산북동	3467-1	구거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529,465	1,133
합계						542,783	7,633

군산시 공고 제2022-91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부지면적 : 19,341㎡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3,494.25㎡, 연면적 5,644.63㎡

구분	층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용도	면적(㎡)	용도	
주1동	1층	580.80	업무시설	580.80	업무시설	
	2층	580.80		580.80		
	3층	580.80		580.80		
	4층	430.10		430.10		
주2동	1층	138.87	업무시설	138.87	업무시설	
주3동	1층	425.02	업무시설	425.02	업무시설	
	2층	87.26	업무시설	87.26	업무시설	
주4동	1층	555.78	업무시설	555.78	업무시설	
	2층	494.58	업무시설	494.58	업무시설	
주5동	1층	147.29	업무시설	147.29	업무시설	
주6동	1층	123.20	업무시설	123.20	업무시설	

주7동	1층	303.83	업무시설	303.83	업무시설	
주8동	1층	128.51	업무시설	128.51	업무시설	
주9	1층	197.96	업무시설	197.96	업무시설	
	2층	72.52	업무시설	72.52	업무시설	
주10	1층	-	-	208.51	업무시설	신축
주11	1층	-	-	488.00	업무시설	신축
부1동	1층	33.60	업무시설	33.60	업무시설	
부2동	1층	33.60	업무시설	33.60	업무시설	
부3동	1층	33.60	업무시설	33.60	업무시설	
합계		4,948.12		5,644.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주택행정과)

5. 사업기간 : 인가고시일 ~ 2022. 2. 28.

6.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익산시 고시 제2022-80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늘푸른 공원과(☎063-859-58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4월 29일

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변경)결정 내용

1. 도시계획시설(익산묘지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	익산 묘지공원	묘지공원	팔봉동 산68-1번지 일원	200,303	-	200,303	건설부고시299 (86.07.04)	

②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익산묘지공원) (변경)결정 내용

1. 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익산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69,740	감)169,437	200,303	3,448.84	감)93.69	3,355.15	4,286.94	감)485.91	3,801.03	100.0	
기 반 시 설	소계	16,777	감)683	16,094	-	-	-	-	-	8.0	
	도로	15,880	감)643	15,237	-	-	-	-	-	7.6	
	광장	897	감)40	857	-	-	-	-	-	0.4	
조경시설	13,895	-	13,895	221.70	-	221.70	221.70	-	221.70	6.9	
휴양시설	5,140	-	5,140	70.00	-	70.00	70.00	-	70.00	2.6	
편익시설	11,800	증)82	11,882	107.52	증)180.30	287.82	107.52	증)180.30	287.82	6.0	
공원관리시설	205	-	205	108.50	감)32.00	76.50	108.50	감)32.00	76.50	0.1	
기타시설	112,575	감)455	112,120	2,120.12	감)241.99	1,878.13	2,793.22	감)634.21	2,159.01	56.0	
교양시설	10,033	-	10,033	821.00	-	821.00	986.00	-	986.00	5.0	
녹 지	199,315	감)168,381	30,934	-	-	-	-	-	-	15.4	

나. 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세부조사

구분	기정		변경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69,740	감)169,437	200,303	3,448.84	감)93.69	3,355.15	4,286.94	감)485.91	3,801.03	
기 반 시 설	소계				16,777	감) 683	16,094	-	-	-	-	-	-	
	1-1	도로	1-1	도로	15,140	감) 683	14,457	-	-	-	-	-	-	변경
	1-2	보행로	1-2	보행로	740	-	740	-	-	-	-	-	-	
	2-1	진입광장1	2-1	진입광장1	310	-	310	-	-	-	-	-	-	
	2-2	진입광장2	2-2	진입광장2	587	감)40	547	-	-	-	-	-	-	변경
조 경 시 설	소계				13,895	-	13,895	221.70	-	221.70	221.70	-	221.70	
	3	잔디광장	3	잔디광장	4,000	-	4,000	-	-	-	-	-	-	
	4-1	과고라1	4-1	과고라1	105	-	105	-	-	-	-	-	-	
	4-2	과고라2	4-2	과고라2	20	-	20	-	-	-	-	-	-	
	4-3	과고라3	4-3	과고라3	90	-	90	-	-	-	-	-	-	
	4-4	과고라4	4-4	과고라4	20	-	20	-	-	-	-	-	-	
	4-5	과고라5	4-5	과고라5	20	-	20	-	-	-	-	-	-	
	4-6	과고라6	4-6	과고라6	-	-	-	16.00	-	16.00	16.00	-	16.00	
	4-7	과고라7	4-7	과고라7	-	-	-	16.00	-	16.00	16.00	-	16.00	
	4-8	과고라8	4-8	과고라8	-	-	-	16.00	-	16.00	16.00	-	16.00	
	4-9	과고라9	4-9	과고라9	-	-	-	16.00	-	16.00	16.00	-	16.00	
	4-10	과고라10	4-10	과고라10	-	-	-	16.00	-	16.00	16.00	-	16.00	
	4-11	과고라11	4-11	과고라11	64	-	64	10.00	-	10.00	10.00	-	10.00	
	4-12	과고라12	4-12	과고라12	64	-	64	10.00	-	10.00	10.00	-	10.00	
	4-13	과고라13	4-13	과고라13	64	-	64	10.00	-	10.00	10.00	-	10.00	
	4-14	과고라14	4-14	과고라14	64	-	64	10.00	-	10.00	10.00	-	10.00	
	4-15	과고라15	4-15	과고라15	64	-	64	10.00	-	10.00	10.00	-	10.00	
	4-16	과고라16	4-16	과고라16	-	-	-	26.00	-	26.00	26.00	-	26.00	휴게공간
	4-17	과고라17	4-17	과고라17	-	-	-	6.90	-	6.90	6.90	-	6.90	위치이동 진입광장
	4-18	과고라18	4-18	과고라18	-	-	-	6.90	-	6.90	6.90	-	6.90	진입광장
	4-19	과고라19	4-19	과고라19	-	-	-	6.90	-	6.90	6.90	-	6.90	진입광장
	5-1	화원	5-1	화원	6,920	-	6,920	-	-	-	-	-	-	
6-1	수경시설	6-1	수경시설	-	-	-	45.00	-	45.00	45.00	-	45.00	진입광장	
8	미로원	8	미로원	2,400	-	2,400	-	-	-	-	-	-		
휴 양 시 설	소계				5,140	-	5,140	70.00	-	70.00	70.00	-	70.00	
	9	휴게소	9	휴게소	140	-	140	64.00	-	64.00	64.00	-	64.00	
	10	야유회장	10	야유회장	4,900	-	4,900	-	-	-	-	-	-	
	11-1	휴양휴게공간1	11-1	휴양휴게공간1	94	-	94	-	-	-	-	-	-	등락차개소
	13-1	그늘쉼터1	13-1	그늘쉼터1	3	-	3	3.00	-	3.00	3.00	-	3.00	
	13-2	그늘쉼터2	13-2	그늘쉼터2	3	-	3	3.00	-	3.00	3.00	-	3.00	
편 의 시 설	소계				11,800	증)2	11,802.00	107.52	증)180.30	287.82	107.52	증)180.30	287.82	
	14	음수대	14	음수대	10	-	10	-	-	-	-	-	-	
	15-1	주차장1	15-1	주차장1	1,230	-	1,230	-	-	-	-	-	-	
	15-2	주차장2	15-2	주차장2	830	-	830	-	-	-	-	-	-	
	15-3	주차장3	15-3	주차장3	3,930	-	3,930	-	-	-	-	-	-	
	15-4	주차장4	15-4	주차장4	735	-	735	-	-	-	-	-	-	
	15-5	주차장5	15-5	주차장5	4,710	-	4,710	-	-	-	-	-	-	
	16-1	화장실1	16-1	화장실1	155	증)2	157	49.32	증)147.30	196.82	49.32	증)147.30	196.82	건축물대장 반영
	16-2	화장실2	16-2	화장실2	100	-	100	28.00	-	28.00	28.00	-	28.00	
	16-3	화장실3	16-3	화장실3	100	-	100	30.00	-	30.00	30.00	-	30.00	
	-	-	16-4	화장실4	-	증)40	40	-	증)33.00	33.00	-	증)33.00	33.00	신설

구분	기 정		변 경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시설 번호	시설명	시설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관리 시설	소계				205.00	-	205	108.50	감)32.00	76.50	108.50	감)32.00	76.50	
	17-1	관리사무소1	17-1	관리사무소1	205	-	205	76.50	-	76.50	76.50	-	76.50	
	17-2	관리사무소2	-	-	-	-	-	32.00	감)32.00	-	32.00	감)32.00	-	폐지
기타 시설	소계				112,575	감)455	112,120	2,120.12	감)241.99	1,878.13	2,793.22	감)634.21	2,159.01	
	18	화장장	18	화장장	5,280	감)169	5,111	1,010.00	감)270.29	739.71	1,010.00	감)242.51	767.49	건축물대장 반영
	19-1	남골당1	19-1	봉안당1	900	-	900	110.00	증)37.30	147.30	110.00	증)37.30	147.30	건축물대장 반영
	19-2	남골당2	19-2	봉안당2	4,170	-	4,170	1,000.12	감)100.00	900.12	1,673.22	감)520.00	1,153.22	건축물대장 반영
	-	-	19-3	봉안당3	-	증)239	239	-	증)91.00	91.00	-	증)91.00	91.00	변경
	20	간차장소	-	-	70	감)70	-	-	-	-	-	-	-	폐지
	21-1	묘역1	21-1	묘역1	1,890	-	1,890	-	-	-	-	-	-	
	21-2	묘역2	21-2	묘역2	19,450	-	19,450	-	-	-	-	-	-	
	21-3	묘역3	21-3	묘역3	34,310	감)380	33,930	-	-	-	-	-	-	변경
	21-4	묘역4	21-4	묘역4	4,610	-	4,610	-	-	-	-	-	-	
	21-5	묘역5	21-5	묘역5	6,370	-	6,370	-	-	-	-	-	-	
	21-6	묘역6	21-6	묘역6	9,200	-	9,200	-	-	-	-	-	-	
	22-1	자연장지1	22-1	자연장지1	7,190	감)37	7,153	-	-	-	-	-	-	변경
22-2	자연장지2	22-2	자연장지2	11,840	감)38	11,802	-	-	-	-	-	-	변경	
22-3	자연장지3	22-3	자연장지3	7,235	-	7,235	-	-	-	-	-	-		
교양 시설	소계				10,033	-	10,033	821.00	-	821.00	986.00	-	986.00	
	23	계각	23	계각	85	-	85	10.00	-	10.00	10.00	-	10.00	
	24	충령탑	24	충령탑	120	-	120	-	-	-	-	-	-	
	25	기념탑	25	기념탑	1,130	-	1,130	-	-	-	-	-	-	
	26	온실	26	온실	1,035	-	1,035	-	-	-	-	-	-	
	27	생과사체혈관	27	생과사체혈관	640	-	640	165.00	-	165.00	330.00	-	330.00	
	28	이화교각안사장	28	이화교각안사장	3,500	-	3,500	-	-	-	-	-	-	
	29	노인공동작업장	29	노인공동작업장	3,342	-	3,342	646.00	-	646.00	646.00	-	646.00	
	30	기념비	30	기념비	181	-	181	-	-	-	-	-	-	
	누 지				199,315	감)168,381	30,934	-	-	-	-	-	-	변경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7	2,411	15,880	3	570	5,700	2	486	3,888	12	1,355	6,292
	변경	-	감)145	감)643	-	감)145	감)643	-	-	-	-	-	6
	변경후	17	2,266	15,237	3	425	5,051	2	486	3,888	12	1,355	6,298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	-	-	-	-	-	-	-	-	-	-	-
중로	기정	1	243	2,916	-	-	-	-	-	-	1	243	2,910
	변경	-	-	-	-	-	-	-	-	-	-	-	6
	변경후	1	243	2,916	-	-	-	-	-	-	1	243	2,916
소로	기정	16	2,168	12,964	3	570	5,694	2	486	3,888	11	1,112	3,382
	변경	-	감)145	감)643	-	감)145	감)643	-	-	-	-	-	-
	변경후	16	2,023	12,321	3	425	5,051	2	486	3,888	11	1,112	3,382

라.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 계					-	2286	15,237	-	-	-	-
소 계					-	243	2,916	-	-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3	2,916	팔봉동 산0-6	팔봉동 388-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3	2,916	팔봉동 산8-2	석왕동 산32-1	일반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소 계					-	486	5,051	-	-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6	1,000	팔봉동 388-1	팔봉동 388-1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6	1,000	석왕동 25-13	팔봉동 388-13	일반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84	1,840	팔봉동 388-1	팔봉동 388-1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184	1,840	석왕동 25-9	팔봉동 388-13	일반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80	2,794	팔봉동 253-13	팔봉동 253-9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35	2,151	석왕동 25-9	석왕동 25-13	일반도로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면적소 및 시종점 변경
소 계					-	486	3,888	-	-	-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06	2,448	팔봉동 388-1	석왕동 산89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06	2,448	석왕동 25-10	석왕동 25-13	일반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180	1,440	석왕동 산79-1	석왕동 산79-1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2	2	8	특수도로	180	1,440	팔봉동 388-13	팔봉동 388-13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소 계					-	1,112	3,322	-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0	240	석왕동 388-13	석왕동 388-1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0	240	석왕동 25-9	석왕동 산32	일반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215	800	석왕동 산83-1	석왕동 산79-1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2	4	특수도로	215	800	팔봉동 388-14	팔봉동 388-14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3	3	특수도로	254	782	석왕동 산83-1	석왕동 257-4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3	3	특수도로	254	782	팔봉동 388-14	팔봉동 388-14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4	2	특수도로	110	220	팔봉동 산83-1	팔봉동 산79-1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4	2	특수도로	110	220	팔봉동 388-14	팔봉동 388-14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60	240	팔봉동 388-1	석왕동 산79-1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5	4	특수도로	60	240	팔봉동 388-14	팔봉동 388-13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6	2	특수도로	47	94	팔봉동 산79-1	팔봉동 산79-1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6	2	특수도로	47	94	석왕동 25-9	석왕동 25-9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7	2	특수도로	110	220	팔봉동 산79-1	팔봉동 산79-1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7	2	특수도로	110	220	석왕동 25-9	석왕동 25-13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8	3	특수도로	85	222	팔봉동 388-13	팔봉동 388-13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8	3	특수도로	85	222	팔봉동 388-14	팔봉동 388-13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9	3	특수도로	107	290	팔봉동 388-13	팔봉동 388-13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9	3	특수도로	107	290	팔봉동 388-13	팔봉동 388-14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0	3	특수도로	72	215	팔봉동 388-14	팔봉동 388-14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10	3	특수도로	72	215	팔봉동 388-13	팔봉동 388-14	보행자도로	지적분할 등에 따른 시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1	15	특수도로	12	19	팔봉동 388-14	팔봉동 388-13	보행자도로	

※ 지적분할 등 지번 변경에 따른 시종점 변경사항 반영

2. 결정사유 :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 및 편의공간 재배치를 위한 공원시설 면적 변경
3. 관계도서 : “계재 생략” 끝.

익산시 공고 제2022-1355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마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마동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늘푸른공원과(☎063-859-589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4월 2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 익산시 마동64-8번지 외84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마동근린공원)사업
 - 명 칭 : 마동근린공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3. 실시계획인가 변경 사유
 - 마동공원 내 추진중인“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테니스대회 유치시 주차공간 확보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등 시민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기 위함
 - 익산 마동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익산시 고시 제2022-13호),(익산시 고시 제2022-74호) 사항 반영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36,065㎡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6.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06.30까지
7.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공고 제2022-744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KIST 전북분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 KIST 전북분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에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4월 2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7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전북분원) 건립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연구시설 : 전체면적 A=316,193㎡ 중 분할시행면적 A=282,245.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설공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번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윤석진
 - 토지매수 :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완주군수(일자리경제과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게재생략
7. 열람(의견제출)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8. 열람(의견제출)장소 :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 일자리경제과(063-290-2413), 봉동읍행정복지센터(063-290-3443)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